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표준번호 : NEX1(C)-384-05

제정·개정·폐지권자	구매기획팀장
제 정 일 자	2022.11.01
개 정 번 호	00
기 안 부 서	구매기획팀

LIG 넥스원(주)

제정일자 : 2022.11.01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개정번호 : 0

개정일자 :

페이지 : 1 / 2

■ 개정이력 일람표

No.	년 월 일	구 분		개 정 (확 인) 내 용	기록자
		확인	개정		
0	2022.11.01			- 제정	허동근

(주) 1. 개정내용은 중요한 사항만 기록 하십시오.

2. 개정이력이 1 페이지를 초과할 경우에는 앞의 이력을 삭제하십시오.

LIG 넥스원(주)

제정일자 : 2022.11.01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개정번호 : 0

개정일자 :

페이지 : 2 / 2

제 1 조 (목적)

본 기준은 하도급 거래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 및 사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사전 예방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1. 설치 및 구성

심의위원회는 구매담당(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구매부서장 및 법무부서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은 심의위원회에 참석이 불가할 경우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2. 운영

- 가. 내부 심의위원회를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현안 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정기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안건 없음"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기록을 관리한다.
- 나.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금액과 수급 사업자에 대한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을 사전 심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심의 대상은 하도급 개별계약건의 연간거래(입고)금액이 200억원 이상인 계약체결 예정 건으로 한다.
단, 하도급거래 적법성 사후검증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대금지급의 기한내 완료 여부, 하자보수 책임을 부당하게 전가하지는 않았는지 여부 등을 검증한다. 검증 대상은 사전 심의 대상 기준을 따르며 반기 1회 실시한다.
- 다. 내부 심의위원회는 매년 1/4분기 중에 협력회사 등록, 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심의한다.
- 라.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회사 미선정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신청건을 심의한다.
- 마. 내부 심의위원회는 필요 시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익명성을 보장한다.
- 바. 내부 심의위원회는 분쟁의 가능성이 있는 수급사업자의 의견에 대하여 사실 관계 및 관련 수급사업자의 의견을 검토하여, 조정 방안을 심의한다.
- 사. 내부 심의위원회는 분쟁의 발생 시 즉시 경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아. 내부 심의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여야 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자. 내부 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를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

LIG 넥스원(주)

제정일자 : 2022.11.01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개정번호 : 0

개정일자 :

페이지 : 3 / 2

이상 보관한다.

제 3 조 (부칙)

이 기준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